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이용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7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용균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박승진, 서준오, 왕정순,  
이영실,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허 훈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나. 교육감의 인문교육 진흥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인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라. 인문교육 관련 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

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문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10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7조(전문가 협의)	×	기시행 사업 <sup>1)</sup> 으로 서울시 교육청 '독서토론 교육자문관' 운영을 통해 자문 및 의견 수렴(연중)
2	제8조(인문교육 진흥사업)	×	기시행 사업 <sup>2)</sup>
3	제9조 (인문교육 관련 교육· 행사 개최)	×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챌린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시행 사업 <sup>3)</sup> (제1항)
		△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개최 중 작가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는 기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 (제2항)
4	제10조(경비의 지원)	△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
5	제11조(포상)	×	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통해 포상을 기추진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9조제2항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관련 인문학 관련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및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의 규모 및 시기, 안 제10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1) 서울시 교육청 '독서토론 교육자문관' 운영을 통해 자문 및 의견 수렴(연중) \* 독서토론-소양교육 기본계획  
-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 중 독서·토론교육 자문관 운영(14,080천원)

2) 인문교육 진흥사업 관련 사업내역  
-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 중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701,223천원),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11,800천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동아리) 및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247,500천원) 등  
-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중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3,259,035천원)

3) 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사업내역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사서(교사) 역량 강화지원(16,550천원)  
-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중 행사개최(서울형심층쟁점독서토론프로그램운영 20,000천원) 등  
※ 초청강사 인문학 강좌 개최(2024년)  
- 강좌명 : 디지털시대 학교 독서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  
- 일 시 : 2024. 6. 18.(화) 오후 4시 ~ 6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